

건양대학교 명곡학술연구비 관리지침

1. 지원 목적

건양대학교 명곡학술연구비는 교수들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창의적인 학문적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도록 연구비를 지원하여, 건양대학교가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전하는 데 일익을 담당케 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기본방침

- 가. 탁월성과 기회균등의 두 원칙에 기준하여 지원한다.
- 나. 자유경쟁 원칙에 따라 선정하여 지원한다.
- 다. 연구비 지원정책, 방식 및 운영에 있어 학문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성을 살린다.
- 라. 연구과제에 대한 심사 평가는 공정성과 객관성으로 그 합리성을 견지한다.
- 마.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를 철저히 하여 연구지원의 목적을 달성한다.

3. 지원 내용

- 가. 지원 분야: 전 의과학 분야의 교수 자유 과제

나. 지원 과제 형태: 논문

다. 지원 형태:

- (1) 개인 및 공동연구: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및 건양대학교병원에 소속된 전임교원이 단독 혹은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를 말한다.
- (2) 삽제(2016.08.11)

4. 지원액 및 연구비 산정기준

연구비 지원액은 아래와 같은 수준으로 지원한다.

- 가. 개인 및 공동연구 : 1,000만원 및 2,000만원 이하
- 나. 매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결정한다.

5. 연구기간

논문 연구 : 1년 (당해년 9월 1일부터)

6. 신청자격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및 건양대학교병원에 소속된 전임교원으로 최근 3년 동안 전문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3편 혹은 이에 상응하는 연구업적이 있어야 한다.

7. 신청자격의 제한

다음의 경우에는 연구비 신청을 제한한다.

- 가. 연구기간 중 연구 책임자가 6개월 이상 휴직 또는 장기출장(연구년에 따른 연구출장은 예외)을 계획하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연구를 충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나. 과거에 본 연구비를 지원받고 기한 내에 연구성과물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단, 연구결과 완결은 의과학 연구소에 연구성과물을 제출함을 말한다.)
- 다. 지원신청서 상 인적사항 및 연구업적란에 기입한 정보에 거짓이 발견될 경우.
- 라. 본 신청 과제가 지원신청서 상 인적사항 및 연구업적란에 기입된 기수행 연구와 동일한 경우.
- 마. 과거에 본 연구비를 지원받고 이후 연구비를 반납한 경우.(해당 년차 다음해부터 2년간 제한)
(2020.08.06)

8. 연구진의 구성

- 가. 연구책임자 :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및 건양대학교병원에 소속된 전임교원(2020.06.11)

나. 삽제(2016.08.11)

- 다. 연구보조원 :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대학원 석, 박사학위과정의 대학원생, 학부생 및 연구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9. 신청절차

- 가. 신청서 제출 : 연구책임자는 소정의 연구비지원신청서를 2부 작성하여 명곡의과학연구소장에게 제출한다.
- 나. 신청 마감 : 7월 둘째 금요일

10. 연구지원과제의 심사기준 및 선정 절차

가. 심사기준

-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2) 연구내용 및 방법의 창의성과 탁월성
- (3) 연구자의 연구수행 능력과 최근 3년간의 연구업적
- (4) 연구결과 발표에 대한 연구자의 계획과 학문적 기여도
- (5) 연구비 산정의 합리성
- (6) 연구비 신청자격 요건구비 여부
- (7) 지난 2년간 교외연구비 신청실적
- (8) 기타

나. 선정 절차

- (1) 심사위원은 명곡의과학연구 소장을 포함하여 소장이 임명하는 4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명곡의과학연구소 운영위원회는 추천된 연구과제를 심사하여 최종 선정한다. 선정되는 연구과제의 수는 학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의과대학 전체가 균형있게 학문적으로 선정하도록 한다.
- (3) 공동연구 과제가 가능한 한 연구비 총액의 40% 이하로 선정되도록 고려하나, 연구의 내용과 연구자의 연구 수행능력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
- (4) 신임교원의 연구환경 제고를 위해 연구비를 수혜한 적이 없는 연구자가 지원할 경우, 교수-학부학생의 연구 환경 장려하기 위해 교수-학부학생 공동연구 과제를 지원할 경우, 임상-기초 교수의 연구 환경 장려 및 공동책임부여를 위해 임상-기초 공동연구로 과제를 지원할 경우, 심사점수 총점의 5%를 가산점으로 부여한다.
(신임교원: 임용 3년이내 혹은 명곡학술연구과제를 수혜한 적이 없는 교원)
- (5) 심사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교수로서의 근무연수가 짧거나 혹은 명곡학술연구비의 수혜 회수가 적은 연구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 (6) 연구비 수혜 3년 이내 수혜자가 지원 할 경우 심사 시 감점할 수 있다. 단, 연구비 수혜시점은 연구개시일로 한다. (심사점수가 동일한 경우)

11. 과제의 시작

- 가. 과제선정통지 : 선정된 연구과제는 8월말 경에 의과대학 전교수를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해 통지한다.
- 나. 선정과제의 연구책임자를 대상으로 선정 후 한달 내에 연구비 사용과 과제 추진 시 주의점에 관한 1회의 교육을 실시하고, 이하 서류들을 이메일을 통해 통지한다.

별지#1) 협약서 (한 달 내 서명하여 제출)

별지#2) 서약서 (한 달 내 서명하여 제출)

별지#3) 연구원 참여계약서 (참여 해당월 내 제출)

별지#4) 명곡학술연구비 관리지침

별지#5) 연구비 사용 기준 및 안내문: 연구비 관련 안내 / 실행예산산정 기준표 / 건양대 사업자 등록 번호 및 사용방법 / 연구비 집행 유의사항 / 연구비 정산 안내

별지#6) 집행 서식: 표지 / 예산서 / 사용내역서 / 입금의뢰서 / 영수증 첨부철 / 인건비 영수증 / 연구 활동비 영수증 / 예산변경신청서 / 회의결과보고서

* 연구비 예산 변경관련: 최초 예산(지원신청서 상의 예산)에 근거하여 예산변경신청서 작성하는 경우

: 인건비 증액을 제외한 연구비 예산변경시 소장의 허가를 받는다.

- 최초 예산에서 미책정 비목에 대한 예산 책정

- 인건비 감액 포함 상한 %내에서의 금액 변동시

- 같은 비목내 세부항목의 금액을 정했을 경우 세부항목 간 예산 변경시

* 예산변경시 예산변경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소장의 허가를 받는다.

* 학회 연회비는 연구비 예산에서 지원될 수 없으며, 예의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다.

별지#7) 출장신청원

별지#8) 학회 참석관련 여비 정산 서식

별지#9) 교내 여비규정

별지#10) 연구계획변경신청서

별지#11) 결과보고서 서식

별지#12) 결과물(논문) 소속 표기 및 문구 안내문

별지#13) 결과물(논문 별쇄본) 제출 안내문

별지#14) 연구진행 및 결과물 관련 안내문

12. 과제의 수행

가. 연구비 지급 :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중 매달 소정의 연구비 사용내역서 및 관계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며, 익월에 해당 연구비를 지급받는다.

나. 연구 과제의 변경

(1) 변경이 가능한 사항: 연구제목, 연구내용, 연구기간, 연구진, 기타 관련사항에 한하며 연구기간 변경은 기준 연구 종료일로부터 최장 6개월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나 2회(최장 1년)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연구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도 연구성과물은 최초 승인된 연구 종료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018.08.27).

(2) 변경절차: 연구계획변경신청서(별지#10)를 제출하여 명곡의과학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받는다.

* 연구비 예산 변경관련: 최초 예산(지원신청서 상의 예산)에 근거하여

연구계획변경승인 신청서 작성해야 하는 경우

: 관리지침 12조 나항 (1)항 연구진 변경에 의거 (2)의 변경절차로 진행한다

- 최초 예산에서 인건비 예산을 미신청한 경우

- 최초 예산에서 인건비를 신청하였으나 예산이 부족할 경우

13. 과제의 종료 및 결과물 제출

가. 결과보고서 작성: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양식(별지#11)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논문 별쇄본 제출: 원칙적으로 연구 종료 후 2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금 1천만원 과제의 경우에는 학진등재지 이상, 2천만원 과제의 경우 SCI(E)급의 제출을 의무화한다.

(2) 논문이 본 과제에 의한 결과물임을 해당 서식(별지#13)을 통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3) 연구책임자는 주저자(교신저자 혹은 제1저자)이어야 한다.

(4) 사사는 “이 논문은 20**년도 건양대학교 명곡학술연구비의 (부분적인)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국문)” 또는 “This work was supported (in part) by Konyang University Myunggok Research Fund of 20** (영문)”으로 표기하며, 이를 포함한 2개까지의 사사를 인정한다.
단, n개의 사사를 갖는 논문의 인정을 위해서는 n-2개의 추가 논문을 제출해야 한다.

다. 특허 대체 가능

(1) 특허 등록시 명곡의과학연구소 및 명곡학술연구과제 등의 내용을 기입할 경우 가능

(2) 저널의 주저자 대체: 출원인으로 하되 배분 비율이 높은 것으로 주저자 판단, 동일비율의 경우도 가능

라. 연구 종료 후 연구비로 구입한 물품은 학교의 재물로 귀속시킨다.

14. 연구비 환수

가. 명곡의과학연구소 운영위원회는 연구 기간이 종료된 과제를 대상으로 매년 9월 회의에서 연구비의 환수 여부를 이하와 같이 판단하여 심의, 의결한다.

(1) 전액 환수: 연구책임자의 사망을 제외한 연구의 미흡, 퇴직 등으로 기간 내에 연구성과물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액 환수한다.

(2) 부분 환수: 사용기준(별지#5)에 위배되어 연구비를 사용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금액 만큼의 연구비를 부분 환수한다.

15. 본 지침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이나 본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명곡의과학연구소장이 따로 정한다.

16. 부 칙

이 시 행요강은 2004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이 시 행요강은 2006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이 시 행요강은 2008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이 시 행요강은 2010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이 시 행요강은 2012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이 시 행요강은 2013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이 시 행요강은 2014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이 시 행요강은 2015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이 시 행요강은 2015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이 시 행요강은 2016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이 시 행요강은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이 시 행요강은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이 시 행요강은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이 시 행요강은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